

광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1926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556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19266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5. 9. 23.

판결 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원고는 2015. 1. 2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1)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이 발생하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매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2) 분할 전의 전남 영광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25,668㎡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는 1978. 12.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2. 10. 18. 및 1994. 11. 29. E 및 G 내지 H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1. 1. 6. 접수 제3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1994. 9. 1. 낙찰받은 사실,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J, K를 거쳐 피고가 2015. 3. 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F는 1994.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법정지상권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심재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영광군 임야 1,140㎡

2. 전라남도 영광군 제4호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268㎡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84㎡

